

## 1. 개정이유

누락된 조항을 신설하고 유효기간 2024.9.30. 만료 예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예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재설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누락된 조항(제64조)를 신설하여 기존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재설정(안 제64조)함

\*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89조제3항에 직접적 위임됨

나. 제64조(재검토기한) 신설에 따라 제65조를 삭제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항공안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4조 (재검토키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5조는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 <p>제65조 (유효기간) 이 규정은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0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64조 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삭 제&gt;</p>